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. 12. 9 선고 2022가단5791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11. 18.

판 결 선 고 2022. 12. 9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5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이 2022. 3. 28.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22. 3. 28. 접수 제9171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의 존재

1)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755711호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8. 1. 11. “C은 원고에게 37,312,144원 및 그 중 16,470,018원에 대하여 2006. 1. 10.부터 2006. 10. 25.까지는 연 24%의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”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.

2) 위 판결은 2018. 2. 9. C에게 송달되었고, 2018. 2. 24. 확정되었다.

나.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의 체결

1)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22. 2. 15. 사망하였다.

2) D의 상속인들인 C, 피고, E, F, G는 2022. 3. 28.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3)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22. 3. 28. 접수 제9171호로 2022. 2. 15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라. C의 재산상태

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당시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1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할 것이고,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151,748,200원(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개별주택가격 142,000,000원 +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9,748,200원)인 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88,000,000원(대출금액 기준)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채무를 초과한다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나.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C의 채무초과상태나 사해의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. 그러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장윤미

<별지>

부동산 목록

1. 전라남도 여수시 H 대 413㎡
2. 전라남도 여수시 H
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단독주택 90.72㎡
3. 전라남도 여수시 I 전 231㎡, 끝.

